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부정처사후수뢰·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·공 무상비밀누설·직무유기·위계공무집행방해·무고·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)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(성매매알선등)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피



[대전지방법원 2019. 5. 10. 2018고합453, 2018고합509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 외 5인

【검 사】최정민(기소), 이주희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이관표 외 4인

【주문】

1

1. 피고인 1

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2016. 3.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, 2016. 3. 25.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, 2017. 5. 11.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, 2017. 5. 3.자 직무유기의 점,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무고의 점은 무죄.

피고인 1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2. 피고인 2

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.

피고인 2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3. 피고인 3

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3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.

피고인 3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4. 피고인 4

피고인 4는 무죄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```
피고인 4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  5. 피고인 5
  피고인 5는 무죄.
  피고인 5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  6. 피고인 6
  피고인 6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.
 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 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 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6에 대한 각 범인도피의 점은 무죄.
  피고인 6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[이유]
  1
[이유]
  ]
【이유】
  ]
[이유]
  1
[이유]
  ]
[이유]
  1
```

[이유]

1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